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9. 16.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8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89회 제1차정례회 제6차위원회 (2002. 9. 1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 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채진욱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시행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시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각각 인하됨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매각대금분할 납부시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5퍼센트에서 4퍼센트, 매각대금의 연체이자율을 연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인하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의2 및 제27조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2002. 4. 20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시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율이 연 5%에서 연 4%로, 매각대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15%에서 연 10%로 각각 인하됨에 따라 구유지의 이자율도 시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21조의2에서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구유재산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연 4%로 인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물론 매각대금의 연체율도 연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여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해당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유로 개정하려는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외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되는가?

○ 답변요지(채진묵 재무과장) : 해당 없음.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외에 있는 토지가 2, 3년 후 재개발지역으로 선정시에는 어떻게 되는가?

○ 답변요지(채진묵 재무과장) : 계약 당시로 적용되므로 계약 후에 변경된 사항에는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2. 8.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시행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시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각각 인하됨에 따라 구유지에 대하여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개정골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5퍼센트에서 4퍼센트, 매각대금의 연체이자율을 연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인하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및 제27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1) 지방재정법시행령(2001. 9.15 대통령령 제17363호) 제100조의3

(2)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2002. 4.20 조례3992호) 제22조의2 및 제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02. 8. 1 ~ 8.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본문중 “영 제100조의3 제2호”를 “영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로,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각각 한다.

제27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이자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매각대금부터 적용한다.
- ③ (매각대금 연체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토지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매각대금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100조의3제2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 ----- 제100조의3제1항제2호----- ----- 연 4퍼센트----- ----- 1. ~ 3. (현행과 같음)</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연 10퍼센트로 한다.</p> <p>②~③(생략)</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